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872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 2 |
| ※ 참고자료 .....                           | 8 |
| 1. 온누리상품권 발행 현황 .....                  | 8 |
| 2.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                | 9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5. 7. 31.
3. 회부연월일 : 2025. 8. 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생계형 적합업종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제12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① 생계형 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br>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1)가목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개별가맹점의 등록 대상을 ‘시장등2)의 상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환전대행가맹점의 등록 대상을 ‘상인조직3)’으로 한정하고 있음.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등”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의미함.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sup>4)</sup>으로 지정된 생계형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sup>5)</sup>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것임.

4) 2025년 10월말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은 서점업 등 10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음. 【참고자료2】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참조.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사업장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한 상인 및 상인조직이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소득기준 이하의 상인에 대하여는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가맹점으로 등록한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

②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임을 인지하고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3.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는 분야로서,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여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은 미비한 실정으로,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다만, 생계형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소속 시장등의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제26조의4제5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개업일, 휴업일, 폐업일 및 사업장의 소재지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 말소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도입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온누리상품권 사업은 개별 상인이 아닌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 등 취약상권 성격을 갖는 특정 지역의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데 반해, 생계형 소상공인은 상권 등 지역 단위가 아닌 업종에 따라 분류되므로, 생계형 소상공인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온누리상품권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sup>6)</sup>

둘째, 생계형 적합업종의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자료를 살펴보면,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과 같이 평균 연매출 규모가 전통시장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2023년 기준 1.4억원)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LPG연료 소매업’과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국수 제조업’ 등 일부 생계형 적합업종의 경우 연평균 매출액이 전통시장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2023년 기준 1.4억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6) 현재도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인이 전통시장 등 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경우 온라인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및 평균 연매출 규모

| 구분 | 생계형 지정<br>(통계연도) | 업종                             | 소상공인<br>사업체수(개) | 평균 연매출<br>(백만원) |
|----|------------------|--------------------------------|-----------------|-----------------|
| 1  | 2021<br>(2020)   |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 13,648          | 53              |
| 2  | 2024<br>(2023)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 6,127           | 225.5           |
| 3  | 2024<br>(2020)   | LPG연료 소매업                      | 3,630           | 246             |
| 4  | 2025<br>(2020)   | 두부 제조업<br>(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 1,826           | 146.8           |
| 5  | 2025<br>(2020)   | 장류 제조업<br>(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구분안됨) | 1,327           | 118.5           |
| 6  | 2021<br>(2020)   | 국수 제조업                         | 273             | 200             |
| 7  | 2021<br>(2020)   | 냉면 제조업                         | 93              | 176             |
|    | 계                |                                | 26,924          |                 |
|    | 평균               |                                | 3,846           | 167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셋째, 생계형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7)에 따라 대기업등이 사업의 개시 등을 할 수 없어 이미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등 상인에 대한 온누리상품권 정책지원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사용처가 늘어나는 경우 개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증대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7)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위와 같은 사유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종료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온라인상품권 가맹 취소가 필요하며, 이 경우 가맹 취소에 따른 이용자 혼란과 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 부담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
| 문 의 처         |
| 02) 6788-5463 |

## 【참고자료】

### 1

### 온누리상품권 발행 현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상품권 개요

- **(목적)**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이용 가능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통해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기반 확대 ('09년~)
- **(예산현황)** '25년 390,748백만원
- **(발행규모)** '25년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
- **(발행권종)** 지류(5천원·1만원), 모바일(5천원·1·3·5·10만원), 카드형(최초 5,000원 이상 충전 후 100원 단위 충전 가능)
- **(취급기관)** ①지류상품권 : 16개 금융기관\*, ②모바일상품권 : 하나은행 컨소시엄, ③충전식 카드상품권 : KT&BC카드 컨소시엄
  - \* 신한·현대·삼성·KB·농협·하나·BC·롯데 총 8개 메이저 카드사 참여
- **(사용처)**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 등 내 가맹점

#### □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 발행금액    | 판매금액    | 회수      |       |
|----------|---------|---------|---------|-------|
|          |         |         | 금액      | 누적회수율 |
| 2009년    | 200     | 105     | 63      | 60.3% |
| 2010년    | 900     | 753     | 638     | 81.8% |
| 2011년    | 2,400   | 2,224   | 1,810   | 81.5% |
| 2012년    | 4,060   | 4,258   | 3,862   | 86.8% |
| 2013년    | 5,000   | 3,258   | 2,918   | 87.7% |
| 2014년    | 6,360   | 4,801   | 4,676   | 90.7% |
| 2015년    | 7,381   | 8,607   | 7,819   | 90.8% |
| 2016년    | 10,030  | 10,946  | 10,858  | 93.4% |
| 2017년    | 12,850  | 10,743  | 11,170  | 95.9% |
| 2018년    | 15,016  | 14,916  | 14,704  | 96.5% |
| 2019년    | 20,074  | 16,853  | 16,622  | 97.0% |
| 2020년    | 40,487  | 40,139  | 34,085  | 92.9% |
| 2021년    | 31,573  | 31,721  | 33,809  | 95.8% |
| 2022년    | 35,391  | 27,034  | 25,260  | 95.4% |
| 2023년    | 20,242  | 28,537  | 30,563  | 97.1% |
| 2024.11월 | 35,074  | 41,197  | 36,886  | 95.8% |
| 총 누계     | 247,038 | 246,092 | 235,743 | 95.8% |

## 2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개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 ☐ **(제도개요)** 중기부장관이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중견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
- \* 위반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벌칙,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 ☐ **(근거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18.6.12제정, '18.12.13시행)
- ☐ **(신청대상)** ①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②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만료 1년 6개월 이내, ③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으로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 ☐ **(규제대상)** 대기업등(중견기업 포함)
- ☐ **(지정기간)** 5년
- ☐ **(처리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 실태조사·의견수렴 / 동반위성장위원회 추천 → 심의족 심의·의결(중기부 內) → 중기부 지정·고시 → 위반 시 벌칙 부과
- \* **(심의위원회)**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위원(각 2명)과, 공익위원 5명의 민간위원(총 15명)으로 구성
- ☐ **(심의기준)** 업종내 소상공인 비율 및 영세성 및 취약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 종합 고려
- ☐ **(대기업등 진출제한)** 생계형 적합업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며, 소비자후생·관련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사항 승인·적용

## &lt;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유효 업종·품목(10개) &gt;

| 연번 | 업종 및 품목      | 지정기간                                               | 연번 | 업종 및 품목 | 지정기간                                           |
|----|--------------|----------------------------------------------------|----|---------|------------------------------------------------|
| 1  | 서점업          | '19.10.18. ~ '24.10.17.<br>'24.10.18. ~ '29.10.17. | 6  | 간장 제조업  | '20.01.01.~'24.12.31.<br>'25.02.01.~'30.01.31. |
| 2  | LPG연료 소매업    | '19.11.20. ~ '24.11.19.<br>'24.11.20. ~ '29.11.19. | 7  | 된장 제조업  |                                                |
| 3  | 국수 제조업       | '21.01.01. ~ '25.12.31.                            | 8  | 고추장 제조업 |                                                |
| 4  | 냉면 제조업       | '21.01.01. ~ '25.12.31.                            | 9  | 청국장 제조업 |                                                |
| 5  |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 '21.09.16. ~ '26.09.15.                            | 10 | 두부 제조업  | '20.01.01.~'24.12.31.<br>'25.03.01.~'30.02.28. |